

●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-140호

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2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「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

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시 충족하여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, 해당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민간제안 공모 및 택지 공모 시 사업자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, 해당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공급가격 산정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임.

- 가.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민간제안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하도록 함 (안 제61조제1항제4호)
- 나.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모를 실시할 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별표7의 기준에 따른 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포함하여야 함(안 제72조제1항제7호)
- 다.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시설 설치 및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택지공모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제안하도록 함(안 제72조제2항제4호)
- 라. 2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용지 부분은 대지면적으로 산정하여 감정가와 조성원가의 산술평균으로 공급토록 함(안 별표3)
- 마.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대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 신설(안 별표 7)

2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

주시기 바랍니다.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
→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정부세종청사 6동)

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

○ 전화 : 044) 201-4109, 4481 / 팩스 : 044) 201-5650